

의 정 정 보

2009 - 10 10. 10.

Ⅰ. 최근 선거법 관련 질의·회신 자료	1
Ⅱ. 최근 주요 제·개정 법령	15
Ⅲ.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36
Ⅳ.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 관련 동향	57
<부록> 행복한 책 읽기	78

▣ 최근 선거법 관련 질의·회신 자료

1.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2009 세계장애인문화예술축제』 공동 대회장직 수행	—	1
2.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의 공익광고 출연	—	2
3. 노인대학 졸업장에 지방자치단체장 직·성명 기재	—	2
4.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디지털케이블TV박람회’ 후원 등	—	3
5. 거주불명 등록자에 대한 선거권 부여 등	—	5
6. 주민자치위원의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견학	—	8
7. 정당과 무소속후보자간 선거공조 사실의 선거공보 등 게재	—	9
8. 정당소속 및 무소속 후보자의 단일화모임 구성 등	—	10
9. 국회의원의 명절 현수막 게시	—	11

최근 선거법 관련 질의·회신 자료

1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2009 세계장애인문화예술축제』 공동 대회장직 수행

《질 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이번 10월 재·보궐선거에 출마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선거운동과 전혀 관련 없는 『2009 세계장애인문화예술축제』의 공동 대회장직을 맡아 행사 언론 홍보를 하고 인터넷 매체 및 초대장, 리플릿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 초대글을 게시하는 것이 선거법상 무방한지 문의 드립니다.

□ 2009년 세계장애인문화예술축제

- 일 시 : 2009. 10. 16(금) ~ 10. 23(금) : 8일

- 장 소 : 서울시청 열린광장 일원

- 규 모 : 40여개국 장애문화예술인, 사회저명인사, 언론인, 일반 시민 등 10,000여명

- 주 최 : 사단법인 한국 DPI

- 주 관 : 2009 세계장애인문화예술축제 조직위원회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KBS 한국방송, 조선일보

- 협 찬 : 문화예술관련 단체, 기업 등 (2009. 9. 2. 국회의원 이정선 질의)

《답 변》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009. 9.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2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의 공익광고 출연

《질 의》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장이 당해 공기업 관련 공익광고에 모델로 출연하는 경우 퇴임 후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9. 9. 8. 한국전기안전공사 조만현 질의)

《답 변》

귀문의 경우 선거일전 180일 전에 선거운동 목적 없이 단순히 전기 안전을 홍보하기 위하여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공익광고에 출연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이 공익광고에 출연하는 때에는 그 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제2항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009. 9.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3 노인대학 졸업장에 지방자치단체장 직·성명 기재

《질 의》

(사)대한노인회에서는 젊어서 국가부흥의 기여와 자녀교육 등 어려운 여건으로 배우지 못한 100만여명의 노인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부여하여 배우지 못한 한을 덜어드리고자 경로당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사)대한노인회 지회장이 공동으로 직인을 날인하여 졸업장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질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장이 경로당노인대학 졸업장에 직인을 날인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위 내용이 위반된다면 그 기한은 일시적인지, 아니면 지속적인지 여부 (2009. 8. 25. 사단법인 대한노인회회장 질의)

《답 변》

귀문의 경우 졸업장을 수여할 만한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표시하는 것은 행위목적 및 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009. 9.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4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디지털케이블TV박람회’ 후원 등

《질 의》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융합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저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서는 국내외 방송/IT산업 전문가와 관련업계종사자 및 전국 1500만 케이블TV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디지털케이블TV박람회 『KCTA : Digital Cable TV Show』를 2003년 이래 7년간 성공적으로 개최해오면서, 21세기 신성장 동력산업의 핵심인 뉴미디어 분야의 희망찬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 행사는 매년 6월 중 제주, 부산, 대전 등 지역순회 개최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해외 방송통신계 VIP급 저명인사 초청, 대규모 국제 컨퍼런스 개최, 전국 케이블TV채널에 방송될 특집프로그램 제작 및 공연, 다양한 각종 시청자 이벤트 등 범국가적으로 모든 케이블TV 업계가 참여하면서 지역별 디지털전환 촉진의 큰 계기를 마련해왔습니다.

이에 저희 협회는 2010년도 동 행사 개최를 추진함에 있어, 2010년 6월 2일로 예정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지자체(장)의 공직선거법상 제한 사항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KCTA : Digital Cable TV Show』행사는 전국 범 케이블TV 업계가 참여하는 디지털케이블TV박람회로 국내 디지털방송 확대라는 공공의 목적으로 2003년 이래 7년간 개최해온 연례행사로서, 내년 지방선거의 선거일인 6월 2일 이전인 3월에서 5월 사이에 동 행사를 개최할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상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제한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하는 바입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사비 지원 등의 협찬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지방자치단체의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기간 중 개회식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개회사, 축사 등의 연설을 할 수 있는지 여부
4. 지방자치단체장 연설을 포함한 행사내용을 방송으로 중계 또는 녹화 방송 할 수 있는지 여부 (2009. 9. 10.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 질의)

《답 변》

1.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라 무방할 것이나,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귀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것은 같은 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위반될 것임.

2. 문 3·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동 행사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석하여 의례적인 개회사·축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의 행사를 단순히 후원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86조제6항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근무시간 중에는 참석할 수 없음. 또한, 공동개최 하는 경우에도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된 지방자치단체장은 개회사 또는 축사를 할 수 없을 것이며, 행사 주최 단체의 회원 방송사가 행사내용을 중계 또는 녹화방송 하는 때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부각시키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러서는 아니될 것임. (2009. 9.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5 거주불명 등록자에 대한 선거권 부여 등

《질 의》

2009. 10. 2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민등록법」에 의거 무단전출 직권말소 제도가 폐지되고 거주불명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009 하반기 재·보궐선거 등 선거업무 추진시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거주불명 등록자에 대한 지방선거권 등 부여 문제

□ 현 황

‘09. 10. 2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민등록법에 의거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말소 제도가 폐지되고 거주불명 등록제도가 도입됨.

□ 관련규정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19세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 관할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음(공직선거법 제15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하고,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을 때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음(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 질의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 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공직선거법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권과 지방선거권 부여가 가능한지?

2. 거주불명 등록자에 대한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발송 문제

□ 관련규정

구·시·군선관위는 세대별로 투표안내문을 작성하여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관할구역안의 매세대에 선거공보를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함(공직선거법 제65조제5항, 제153조제1항).

질의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지고 있을 뿐 그 주소에 실제로는 거주하고 있지도 않은 거주불명 등록자에게도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발송해야 하는지와 발송하지 않고 읍·면·동사무소에서 보관하다가 해당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교부할 수 있는지?

3. 선거인명부 이중등록자에 대한 선거권부여 등의 문제

현황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 불일치정보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중앙선관위, 법무부, 외교통상부, 지자체 등 참석) 개최를 통해 해소계획을 확정하고('09.7.29), 이중등록가능자 6,800여명에 대해 공부(주민등록표, 국내거소신고표) 중 어느 한쪽을 정리('09. 9. 15까지)하도록 하여 선거인명부 이중등록자 발생 가능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 중임. 그럼에도, 이중등록가능자 해소절차를 통해 미처 정리되지 않은 자가 있거나, 기존 주민등록 직권말소자 또는 향후 주민등록자가 거주불명 등록자가 되는 경우에는 선거인명부 이중등록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관련규정

19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음(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

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 이상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음(공직선거법 제37조제3항).

질의

가. 특정인이 같은 선거구에 국내거소신고 되어 있으면서 거주불명 등록도 되어 있는 경우 양자 중 어떠한 원부를 근거로 선거권을 부여해야 하는지?

나. 특정인이 각각 다른 선거구에 국내거소신고 되어 있으면서 거주불명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자 중 선거권을 어디에 부여해야 하는지?
 다. 선거인명부작성일 전에 이중등재 가능자를 미처 발견치 못하여 특정인이 2 이상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을 선거인명부 작성 후 발견하게 될 경우, 해당자를 ‘같은 선거에 있어 2 이상의 선거인명부에 오른 자’로 보아 선거인명부에서 어느 한 쪽을 제외하는 것이 가능한지?
 라. 질의 가와 관련하여 거주불명 등록자를 선거인명부에서 제외하기로 한다면,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 중 거주불명 등록된 자가 선거인명부에 등재되기 전 명부에서 일괄 제외하는 것이 적정한지? (2009. 9. 14. 행정안전부 장관 질의)

《답 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 등록자는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음.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거주불명 등록자에게도 「공직선거법」 제65조에 따른 선거공보와 제153조에 따른 투표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할 것임.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되었다면, 그 사람은 국내거소신고표의 주소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이 선거인명부에 올려야 할 것임. 다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주민등록법」 제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해외이주포기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한 사람은 주민등록표의 주소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이 선거인명부에 올려야 할 것임. (2009. 9.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회답)

6 주민자치위원의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견학

《질 의》

주민자치위원의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견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민자치위원 교육의 일환으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견학에 대한 실비(차량 및 식비) 지원 가능 여부?

■ 주민자치박람회 견학 개요

○ 일 시 : 2009. 9. 24 ~ 26 중 1일

○ 참가대상 : 읍·면별 주민자치위원 20여명

○ 견학방법 : 활성화 우수사례 견학 및 자문
견학 후 견학보고서 제출 등 견학 내용 공유

○ 지원방법 : 차량 및 중식 제공

■ 지원근거

○ 「단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3조제4호, 제7조제5항, 제12조제1항, 제18조제5항, 제23조 (2009. 9. 21. 단양군수 질의)

《답 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위원의 직무교육의 일환으로 그 업무와 관련있는 주민자치박람회의 견학을 실시하면서 그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원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 견학과정에서 관광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전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제3항, 제113조·제114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009. 9.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7 정당과 무소속후보자간 선거공조 사실의 선거공보 등 게재

《질 의》

10월 28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다 음 -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간에 선거공조를 위하여 후보자를 단일화하는 경우 단일후보로 결정된 무소속 후보자가 선거공조 사실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공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84조와 관련하여 무방한지 여부

1. 선거공조를 위하여 후보자를 단일화하였음을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 명함, 후보자 명함, 선전벽보, 선거공보에 “○○당과 선거공조를 위하여 후보자를 단일화하였음”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표
2. 문 1의 문구 옆에 ○○당의 정당로고를 같이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표

< 참 고 >

○ 국민중심당 사무총장 권선택이 질의한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정당의 선거운동 지원 가능여부’에 대한 2007. 12. 6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답

○ 시흥시장 보궐선거 무소속 최준열 후보자가 질의한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정당의 선거운동 지원 가능여부’에 대한 2009. 4. 20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답 (2009. 9. 11. 안산상록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자 임종인 질의)

《답 변》

무소속후보자가 귀문 1·2와 같이 정당과 선거공조를 위한 후보자 단일화 사실과 해당 정당의 로고를 선거공보·선전벽보·명함에 게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4조에 위반될 것이나, 예비후보자가 동일한 내용을 예비후보자홍보물이나 예비후보자 명함에 게재하는 것은 같은 법상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2009. 9.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8 정당소속 및 무소속 후보자의 단일화모임 구성 등

《질 의》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질의 사항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소속 및 무소속 후보자가 단일화를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예전 선거의 국회의원 후보자 및 일반시민 자격의 기타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지? 추후 단일화 과정과 절차 등을 논의하고 조언을 구하고 제안을 해주는 역할로 참여할 수 있는지?
2. 정당소속 및 무소속 후보자가 단일화를 하기로 합의한 후, 후보자가 동의한 사람들로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여 단일화를 위한 모든 진행을 의뢰할 수 있는지?
3.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 A가 그로 인해 재·보궐선거를 진행할 때 예비후보 등록기간 중 타당의 예비후보 B를 지지한다고 언론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A후보를 지지했던 시민세력을 이용한 조직 선동 및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지? 그것이 불법적 행동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4. 위 3.의 경우가 가능하다면 시민단체나 명망 있는 인사들이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단일화에 참여한 후보자나 단일화 추진활동에 대하여 지지의사를 언론에 발표하는 것이 가능한지?
5. 단일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사퇴한 정당의 후보자가 단일후보로 확정된 타당의 후보 진영에서 선거대책위원장 등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2009. 9. 21. 이병기 질의)

《답 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소속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음)와 무소속 후보자가 후보 단일화를 위하여 제한된 범위의 제3자가 참여하는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목적 범위 안에서 활동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때에는 그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87조제2항·제89조 또는 제254조 등 각종 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순수하게 후보 단일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모의 기구를 구성하고 그 기구에 단일화의 진행에 관한 사항을 의뢰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단일화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에 이르거나 그 밖의 각종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임.

3. 문 3·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치인 등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 등에 관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언론의 취재에 응하거나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임.

4. 문 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009. 9.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9 국회의원의 명절 현수막 게시

《질 의》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명절 기간 중 평등명절 캠페인으로 지역구 의원사무실 외벽과 거리에 『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평등한 명절 되세요』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의원 명의로 게시하고자 함. 당 행위에 대한 선거법 위반여부.
2. 위 행위 발생시 법적 제재 수위 (2009. 9. 25. 국회의원 조승수 질의)

《답 변》

국회의원이 명절을 맞아 귀문과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자신의 사무실 외벽에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입후보예정 선거구의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을 선전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행위 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 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009. 9.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회답)

[자료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 최근 주요 제·개정 법령

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15
2.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16
3.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17
4.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	—	19
5.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19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20
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22
8.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23
9. 농림수산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	23
10.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26
11.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27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28
13.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30
14.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31
1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32

최근 주요 제·개정 법령

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104호, 2009.09.10. 공포]

1. 개정이유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9574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되어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가족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제한 신청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수수료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 세대명부 등의 열람권자 정비(제6조제3항)

- 1) 주민등록 세대명부, 전출·입자 명부의 열람권자 범위가 채권·채무 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 등으로 지나치게 넓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음.
- 2) 주민등록 세대명부등의 열람권자를 “전입신고를 한 자, 본인이나 세대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여 주민등록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함.

나.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식 등을 신설(제13조의2, 별지 제14호의3서식 신설)

- 1) 가정폭력피해자가 본인 또는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려는 경우 신청서식 등을 규정함.
- 2)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 및 가정폭력 재발방지가 기대됨.

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수수료 조정(제17조제1항)

- 1)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수수료가 50원 단위로 되어 있어 잔액지불이 불편하여 행정력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제3자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본인 통보제 도입에 따른 휴대폰 문자

전송료 등 통신비용 보전을 위한 재원이 필요함.

- 2) 등·초본 교부수수료를 100원 단위로 인상·조정하여 행정능률을 도모하고 본인 통보제 시행에 따른 비용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 방법 개선

- 1)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시 제출하는 권리변동 관련 계약서 등만으로는 명확한 이해관계 입증이 미흡한 경우가 있음.
- 2)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으로써 민원불편 해소 및 담당공무원의 행정능률 도모.

3. 시행령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713호, 2009.09.03. 공포]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조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을 발견한 경우와 검사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는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더라도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계안정비용의 국가지원 비율을 10분의 5 이하에서 10분의 7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3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736호, 2009.09.21. 공포]

1. 개정이유

지방공기업이 공시하는 사항 중 주요사항을 통합공시하고, 사장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임원의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으로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법률 제9575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정보 통합공시의 기준 및 방법,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승인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영정보 통합공시의 기준 및 방법 신설(영 제44조의2 신설)

- 1)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공기업의 경영정보를 통합공시하도록 함에 따라 통합고시의 기준과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공시의 기준, 항목 및 절차를 정하여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방공기업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통합공시기준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도록 함.
- 3) 지방공기업의 경영정보를 통합공시하도록 하여 지방공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기업 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경영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 정비(영 제56조의3)

- 1) 사장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사장 외 이사와 감사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2)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방공사에 두되,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사람 2인, 지방의회가 추천한 사람 3인, 이사회가 추천한 사람 2인 등 총 7인으로 구성하며,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3) 지방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어 운영함으로써 지방공사 임원 인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임원후보의 추천 절차 신설(영 제56조의4)

- 1)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후보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추천하는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 2) 임원후보의 공개모집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통합경영정보 사이트 및 일간지에 공고하되, 모집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 3) 임원후보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추천하도록 함에 따라 임원 인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신설(영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 1)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 2)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제2차관으로 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3)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지방공기업 관련 주요정책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와 경영진단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고, 지방공기업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4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

[대통령령 제21728호, 2009.09.15. 공포]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의 관할구역이 함께 포함된 아산 배방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생활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개발지구 내의 천안시와 아산시 경계구역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5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738호, 2009.09.21. 공포]

1. 개정이유

정부위원회 관리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기술자격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간략히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의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 수립 근거 마련
(영 제5조의2 신설)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도록 지정된 관리단체로 하여금 정비계획의 목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나. 기술자격시험위원회 폐지(현행 제15조 삭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기술자격시험위원회는 그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해당 자격시험 업무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위탁되는 등 위원회를 존치할 필요성이 적어져 정부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기술자격시험위원회를 폐지함.

다.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의 간소화(영 제30조)

- 1) 등록문화재 현상변경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및 허가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과 시·도지사를 모두 거치도록 하여 민원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됨.
- 2)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에서 시·도지사를 경유하는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741호, 2009.09.21. 공포]

1. 개정이유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정기검사를 면제하고, 가스용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스용품 검사의 전부를 생략하는 대상을 축소하며, 소형저장탱크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소형저장탱크의 저장능력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안전관리가 우수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정기검사 면제(영 제7조제3호 신설)

- 1)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2)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정기검사를 면제함.

나. 가스용품 검사의 전부를 면제하는 대상의 축소(영 제8조제1항 및 제2항)

-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검사를 면제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인증 후 품질관리 소홀로 불량제품이 유통되는 문제점이 있음.
-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은 가스용품을 검사의 전부를 생략하는 대상에서 제외함.
- 3) 가스용품의 안정성을 제고하여, 소비자 보호 및 가스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소비자보장책임보험 가입 대상의 확대(영 제16조제1항제1호)

- 1) 용기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뿐만 아니라 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도 소비자보장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2) 가스사고 발생 시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완화

- 1)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형저장탱크의 저장능력 기준을 현행 0.5톤 초과에서 1톤 초과로 완화함.
- 2) 소형저장탱크의 보급 확대 및 액화석유가스의 유통비용 절감으로 액화석유가스의 가격 인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479호, 2009.09.29. 공포]

1. 개정이유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신탁회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미분양주택 취득 요건 변경(영 제4조제1항제9호 및 부칙 제3조)

현재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모든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 신규 인가·등록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을 60퍼센트 이상 취득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소재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하려는 것임.

나. 자산유동화 방식을 활용한 신탁회사의 미분양주택 취득 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영 제4조제1항제11호 신설)

주택의 시공자가 유동화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회사가 신탁받아 운용하면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시행사로부터 취득한 전체 미분양주택 중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의 비율이 6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신탁회사의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지방소재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하려는 것임.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102호, 2009.09.23. 공포]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자에 해당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법률 제 9710호, 2009. 5. 27. 공포·시행)되고,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합산 배제 기타주택의 범위에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미분양주택 취득 당시에 매입약정을 체결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이 포함되는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432호, 2009. 4. 21.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 농림수산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756호, 2009.09.29. 공포]

1. 제정이유

농림수산업 및 식품산업 분야의 과학기술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림수산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림수산물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설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림수산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이 제정(법률 제 9619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농림수산물식품과학기술 육

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운영,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기술료의 징수·감면·사용, 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영 제3조 및 제4조)

- 1) 법률에서 5년마다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을 세우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함에 따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 분야 기술 현황과 예측 자료 등을 요청하여 종합계획을 세우고, 연도별 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 기술 현황과 실적 자료 등을 요청하여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추진방향과 분야별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세부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도록 함.
- 3) 5년 단위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으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체계적 육성·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설치(영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발전 및 육성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이 공동으로 하도록 하며,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다. 연구과제의 선정방법 및 협약 체결(영 제9조 및 제10조)

- 1) 연구과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미리 연구과제평가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연구과제가 선정되면 연구과제를 주

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과 연구과제 선정을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과제의 범위·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지급 방법과 사용·관리 등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 2)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협약을 통해 연구과제 수행을 관리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기술료 징수·감면 및 사용(영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1) 법률에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징수와 감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기술료는 연구개발사업에 사용된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연구개발 성과물을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이용할 경우 100퍼센트, 중소기업은 70퍼센트, 대기업은 30퍼센트 기술료를 감면하도록 하며, 징수된 기술료는 연구개발사업의 재투자사업, 현장수요 조사 사업, 우수실용기술의 발굴·보급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함.
- 3) 기술료 징수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면서 농어업경영체 등에 대한 기술료 감면으로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산업화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의 범위와 절차(영 제16조 및 제17조)

- 1) 법률에서 새로운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발전이 농림수산업 및 식품산업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과 핵심기술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함에 따라 그에 관한 범위와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 2) 기술영향평가 대상 기술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술적·경제적·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되, 해당 기술이 가져올 국민생활의 편익증진과 농림수산식품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기술수준평가에는 특정기술의 선진국 수준과 우리나라 수준, 현재 및 5년 후 기술수준과 기술개발 소요시간 등을 포함하도록 함.

- 3) 기술영향평가와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농림수산 식품과학기술의 체계적·계획적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10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758호, 2009.09.29. 공포]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양곡가공업을 등록제와 신고제로 운영하던 것을 신고제로 통합하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양곡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며, 양곡관리와 관련이 있는 「양곡증권정리기금법」을 「양곡관리법」으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곡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622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양곡정책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부채 중 원금은 상환기일에 현금으로 한꺼번에 상환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며, 쌀 가공식품 시장 활성화와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관리양곡을 시험연구용 및 가공식품 개발용으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3 및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I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82호, 2009.09.11. 공포]

1. 개정이유

농업기계로 인한 사고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에 대한 검사를 검정으로 변경하고, 사후관리와 안전장치의 부착 제도 등의 내용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9621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의 종류, 검정결과에의 처리 및 검정의 생략, 안전관리 대상 농업기계 및 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청 및 방법 등 법률의 위임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기계의 검정(제4조부터 제8조까지)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의 종류는 종합검정, 안전검정, 국제규범검정, 기술지도검정, 변경검정으로 하고, 종합검정은 45일 등 각각의 검정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검정 후에는 검정성적서를 발급하고, 이미 검정을 실시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와 같은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과 관련된 검정항목에 대하여는 검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업기계의 검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나.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관리(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10까지 신설 및 별표 3)

농업용트랙터 등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를 별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안전장치의 주요 규격과 기능설명서를 첨부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청을 하면 안전장치의 구조, 성능 및 조작의 난이도를 조사한 후 안전장치 부착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안전장치 구조 변경 확인, 안전장치 부착 확인의 생략 및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변경 등 조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10까지 및 별표 3과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94호, 2009.09.25. 공포]

1. 개정이유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업 등을 중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업 등을 시작하거나 일정 기간 중단하였다가 재개하는 때에도 허가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 제9534호, 2009. 3. 25. 공포, 2009. 9. 2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741호, 2009. 9. 21. 공포, 9. 2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하는 액화석유가스의 경우 저장소의 저장량을 늘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저장량 증대(제2조제4항)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하는 액화석유가스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저장능력 기준을 250킬로그램 이상에서 500킬로그램 이상 증대하여 현실화 함.

나. 액화석유가스 사업 등의 변경허가 사항 구체화(제6조)

- 1) 가스설비 중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설비의 위치변경이나 수량증가까지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의 부담이 큼.
- 2)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스설비의 위치변경이나 수량증가를 압력용기, 충전설비 및 기화장치 등 중요한 가스설비의 위치변경이나 수량증가로 한정함.

다. 집단공급시설의 변경완성검사 대상 기준 합리화(제28조)

집단공급시설의 변경공사 중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아파트의 공사계획 변경신고 대상과 동일하게 길이 50미터 이상의 배관을 교체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공사 등으로 함.

라. 제품인증을 받은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 생략의 제외 대상 및 검사 종류를 구체화(제36조제3항 및 제4항)

「산업표준화법」의 제품인증을 받은 가스용품으로서 압력조정기, 퓨즈콧 등은 생산단계검사 및 설계단계검사를 모두 받도록 하고, 성능이 변경된 가스용품은 설계단계검사를 받도록 함.

마. 가스전용 운반자동차 소유 및 위탁운송 관련 규정 명확화(별표 3 및 별표 6)

가스전용 운반자동차(용기전용 운반자동차 및 벌크로리)는 허가받은 사업소의 대표자 명의로 확보하도록 하며, 필요시 벌크로리를 통한 위탁운송이 가능하도록 하되 위탁운송 사업자의 자격 등을 명확히 함.

바.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의 정례화(별표 22)

인적 오류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안전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때에 받도록 하던 전문교육을 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그 이후에는 3년에 1회로 정례화 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산단계검사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95호, 2009.09.25. 공포]

1. 개정이유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공사계획을 신고대상에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9533호, 2009. 3. 25. 공포, 9. 2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742호, 2009. 9. 21. 공포, 9. 2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대상과 연료전환 시설의 세부 안전조치 기준을 정하고, 고압가스 충전허가를 받은 자 중 천연가스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대량수요자에 신규로 포함시키며,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자의 전문교육을 정례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천연가스자동차 충전사업자를 대량수요자에 추가(제2조제2항제4호 신설)

- 1) 가스도매사업자가 천연가스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자(천연가스자동차 충전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미비함.
- 2) 가스도매사업자가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대량수요자에 천연가스자동차 충전사업자를 추가함.

나. 도시가스배관의 시공감리 대상 완화 (제21조제1항제4호가목 및 제23조제4항)

도시가스사업자 및 시공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호칭지름 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저압의 공급관 중 길이 20미터 미만인 공급관은 시공감리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스사용자 부지 안에 설치하는 사용자공급관은 전 공정 시공감리대상에서 일부공정 시공감리대상으로 완화함.

다. 정기검사 실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제25조제3항)

- 1) 주택에 설치되는 가정보육시설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주기를 1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시기를 도시가스 공급시설과 동일하게 가스사용자가 검사기관인 한국가스안

전공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2) 주택에 설치된 가정보육시설 운영자의 정기검사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부실검사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안전관리자의 전문교육 정례화 (별표 14 제4호가목)

인적 오류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안전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때에 받도록 하던 전문교육을 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그 이후에는 3년에 1회로 정례화 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4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4호, 2009.09.04. 공포]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5월 27일 규제개혁위원회 및 관계 장관 합동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영업소 외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이용 또는 미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법률 상 근거가 없는 행정처분기준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167호, 2009.09.17. 공포]

1. 개정이유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9511호, 2009. 3. 20. 제정, 4. 21. 시행)에 따라 보급자리주택의 입주예약신청 대상, 자격,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주택공급물량을 확대하여 다자녀 세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며,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실수요자의 입주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세대 1임대주택 공급 규정 마련(제10조제5항 및 제29조제4항·제5항)

- 1) 85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임대주택은 1세대 2주택이상 당첨이 가능하여 불법적으로 전대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2) 1세대 2임대주택 이상 당첨 시 그 중 1주택만 계약체결하고 나머지 주택은 당첨되지 아니한 것으로 관리하며, 임대주택 입주세대가 다른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명도의무를 부여함.

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확대(제19조제6항, 제19조의2, 제32조)

저출산 문제를 해소를 위하여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제공하는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주택공급방안을 마련함. 국민주택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3%에서 5%로 하고, 우선공급 물량 5%를 신규 배정하며, 국민임대주택 공급량은 기존의 3%에서 10%로 하는 한편, 일반공급분에 경쟁이 있을시 3자녀 이상 세대에 우선공급 규정 마련

다. 보급자리주택 입주예약 세부규정 마련(제20조의2 신설)

- 1) 입주자의 선호를 반영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으로 「보금자리주

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입주예약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함.

- 2) 입주예약의 신청자격, 절차, 선호반영 방법, 예약당첨자 관리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출처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1. 부산광역시 출산장려기금 조례안 ————— 36
2.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및 유통업 협력 조례안 ————— 40
3. 경상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7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1 부산광역시 출산장려기금 조례안

의안 번호	587
----------	-----

발의연월일 : 2009. 09.

발 의 자 : 강성태, 김영희, 권영대, 허태준,
홍성률, 박홍주, 김주익, 김석조, 신숙희,
최형욱 의원

1. 제안이유

- 계속되는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저출산이 최근 들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의 다자녀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는 등 출산장려에 대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기금은 부산광역시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고,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 동안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의 1천분의 2를 기금으로 출연토록 함.(안 제3조).
- 나. 기금의 용도는 셋째 이후 출생한 자녀의 고등학교 수업료와 대학·대학교 첫 번째 등록금을 지원토록 함(안 제4조).
- 다. 기금 지원대상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부산광역시에서 출생한 셋째 이후 자녀로서 지원 당시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고등학교, 대학·대학교에 입학한 자로 함(안 제5조).
- 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 함(안 제6조).
- 마.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여성정책위원회가 하도록 함(안 제7조).
- 바.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함(안 제8조).
- 사. 지원대상자가 퇴학·전학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원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부산광역시 출산장려기금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다자녀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출산장려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출산장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시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의 1천분의 2를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동안 일반회계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셋째 이후 출생한 자녀의 고등학교(시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업료 지원
2. 셋째 이후 출생한 자녀의 대학 및 대학교 첫 번째 등록금(입학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원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5조(기금의 지원대상 등) ① 지원대상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시에서 출생한 셋째 이후의 자녀(첫째 자녀가 셋쌍둥이 이상인 경우 및 둘째 자녀가 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셋째 이후의 자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로서 지원 당시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의 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수업료 또는 등록금을 지원 받거나 감면 받은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기금계정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한 시 금고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여성 발전 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여성정책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여성정책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여성가족정책관
2. 기금출납원: 출산장려기금업무담당사무관

제9조(지원금의 중지 등)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원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 하게 할 수 있다.

1. 재학 중 퇴학·전학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8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부산광역시 출산장려기금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출산장려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②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및 유통업 협력 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09. 9.

발 의 자 : 김영식, 장경훈 의원
박돈규 의원 (찬성의원 6인)

1. 제안이유

-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소상공인 및 기타 상인 간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지역 유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경영개선자금지원 등에 대한 지원 규정 마련(안 제3조)
- 나. 대형유통기업과 소상공인 및 기타 상인 간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생협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안 제4조)
- 다. 지역 유통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형유통기업 운영자에게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들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상생협력실적을 매년 발표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두어 대형유통기업과 소상공인 및 기타 상인 간의 상생협력 관련 사항,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등과 함께 대형유통기업의 점포설립, 점포면적, 취급품목, 영업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함(안 제6조)
- 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장과 위원 임명 등 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규정함(안 제7조)

3. 기타사항

가. 관련법규 :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및 유통업 협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소상공인 및 기타 상인 간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지역 유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1차식품과 생활필수품 도·소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기타 상인”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시에서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협력”이란 대형유통기업, 소상공인 및 기타 상인 간에 인력·자금·구매·판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소상공인 지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규모 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진 유통기법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동물류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5. 대형유통기업 및 기타 상인과의 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이 밖에 소상공인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협력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 소상공인 및 기타 상인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유

통업협력계획(이하 “협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력사업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사업에 관한 사항
4. 협력 우수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제고에 관한 사항

제5조(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등) ① 시장은 지역 유통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형유통기업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기업이익의 지역 환원사업 전개에 관한 사항
2. 지역주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3. 지역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의 입점 및 지역 생산품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
4. 우수 지역상품 육성과 발굴 및 전시에 관한 사항
5. 시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수리·보수 등의 공사, 용역서비스, 인쇄물 발주 시에 지역 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협력사항은 소상공인에 우선하여 혜택이 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협력에 기여한 대형유통기업을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홍보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대형유통기업, 소상공인 및 기타 상인의 협력 실적을 매년 발표하여야 한다.

제6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등) 대형유통기업, 소상공인 및 기타 상인 간의 협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협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유통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6. 대형유통기업의 점포설립에 관한 사항
7. 대형유통기업의 점포면적, 취급품목, 영업시간에 관한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은 정무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유통업 소관부서 국장
2.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대형유통기업 대표
4. 소상공인 대표
5. 기타 상인 대표
6. 시민단체 대표
7. 그 밖에 유통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통업 지원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⑦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 대규모점포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

1. 대형마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 내지 마목 및 동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된 점포의 집단

3. 백화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5. 삭제 <2006.6.22>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23>

1.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래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상업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이하 "등록시장"이라 한다)
 - 나.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행하고 있으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한 곳(이하 "인정시장"이라 한다)
2. "상점가"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상인조직"이라 함은 재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단체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시장활성화구역"이라 함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상업기반시설"이라 함은 시장 또는 상점가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6. "시장정비사업"이라 함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7.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라 함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8. "시장정비구역"이라 함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승인·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9. "시장정비사업조합"이라 함은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10. "상가건물"이라 함은 동일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1. "복합형 상가건물"이라 함은 동일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 외에 공동주택 또는 업무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③ 경상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09. 8 . .

제 출 자 : 경상북도지사

1. 제정이유

○ 「환경분쟁조정법」의 규정과 내용이 동일한 기존의 「경상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경상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환경분쟁의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인 해결로 도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운영 목적 및 소관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내지 제2조)

나. 위원회 구성 및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내지 제4조)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위원은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등 환경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3)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심사관, 서기를 둘 수 있도록 함.
- 다. 조정위원회 및 재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1) 조정위원회와 조정가액 5천만원 이하 사건의 재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사건의 재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2) 조정 및 재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 라. 위원회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과 환경분쟁조정 신청시 수수료는 경상북도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내지 제8조)

3. 참고사항

- 환경분쟁조정법(개정 2008.3.21 법률 제8955호)
- 경상북도환경분쟁조정예관한조례(개정 2003.6.19 법률 제8955호)

경상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경상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관사무) 경상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분쟁 신청사건의 알선 및 조정업무
2. 환경분쟁 신청사건의 재정업무
3.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상임위원을 1명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환경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경상북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1급부터 3급까지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
3.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자
4. 환경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사무처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관을 둔다.

1.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와 인과관계의 규명
2. 환경 피해액의 산정
3. 기타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5조(조정위원회 및 재정위원회 운영 등) ① 「환경분쟁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 및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되, 제3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조정위원회 : 3명
2. 재정위원회

가. 조정가액 5천만원 이하 : 3명

나.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 5명

② 조정위원회·재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정위원회·재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6조(관계전문가 등) 위원회 위원장은 특정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를 위촉하거나 감정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6조에 따른 관계전문가·감정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보상금·감정료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 ① 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을 신청하는 자, 조정·재정에 참가를 신청하는 자 및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경상북도수입증지로 납부한다.

③ 알선·조정·재정을 구하는 가액이 취지의 변경 등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 전의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상북도수입증지로 납부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재정문 작성, 서식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북도환경분쟁조정어관한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수 수 료 (제8조 관련)

신청별	조 정 가 액 별 수 수 료
알선 신청	10,000원
조정 신청	1.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 10,000원 2.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1의 수수료에 500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15원을 가산한 금액 3.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 2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10원을 가산 한 금액
재정 신청	1.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 20,000원 2.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1의 수수료에 500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30원을 가산한 금액 3.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 2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20원을 가산한 금액
참가 신청	1. 조정절차 참가신청 : 당해 참가인의 조정가액에 대하여 조정신청의 수수료 산출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2. 재정절차 참가신청 : 당해 참가인의 조정가액에 대하여 재정신청의 수수료 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증거 보전 신청	5,000원
<p>비 고 : 조정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500만원으로 하되, 추후 산정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그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한다.</p>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한다)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설치한다.

제15조(규칙 제정) ① 중앙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대한 처리 절차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조정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조정위원의 지명등) ① 조정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서 행한다.<단서 삭제 2008.3.21>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각각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3.21>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재정위원의 지명 등) ① 재정은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이하 "재정위원회"라 한다)에서 행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건의 재정은 3인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행할 수 있다.

② 재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재정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각각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1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3조(일비등) ①도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도 소속직원이 아닌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중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85.10.31 개정 '95.11.27>

제4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85.10.31>

1. 소청심사 위원회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위원: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기타 각종 위원회 위원: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경북광역시의회 <http://council.gb.go.kr>]

▣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관련 동향

1. 한국형 안전도시 시범 자치단체 9곳 최종 선정 — 57
2. 전입신고, 직장이나 집에서 인터넷으로 해결하세요 — 60
3. 주민등록증 집·사무실에서 받음 수 있다! — 61
4. 읍면동 사무소에서 전기요금 감면신청까지 한번에! — 63
5. 중앙부처 정책연구용역 자료 쉽게 열람할 수 있다 — 66
6. 행정안전부, 추석 맞이 어려운 이웃에 봉사활동 전개 — 67
7. '10년부터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도입 — 68
8. 하이브리드차 구매시 20여만 원 추가 혜택 — 73
9. 공간정보 활용으로 더욱 편리해지는 행정서비스 — 74
10. 안전안심안정'안전도시 시범사업 자치단체 호응 높아 — 76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 관련 동향

1 한국형 안전도시 시범 자치단체 9곳 최종 선정

- 9개 시범 자치단체에 5억원 인센티브 지원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안전·안심·안정’ 3안의 한국형 안전도시 시범사업을 추진할 9개 자치단체를 최종 선정·발표했다.
 - 시범도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지역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9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5억원의 소요사업비를 인센티브로 지원한다.
- ‘안전도시(Safe City)’는 국정과제인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 실현을 위한 새로운 안전관리 패러다임으로
 - 지역 여건에 적합한 안전 사업을 지자체와 주민 및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스스로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조성해 가는 사업이다.
- 전국 16개 시·도로부터 추천받은 40개 우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학계,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도시 시범사업평가단(7인)’ 및 ‘안전도시 추진위원회(11인)’에서
 - 사업 계획서 내용, 기대효과, 추진의지 등을 1차(서면평가, 9.4), 2차(현지실사, 9.9~9.18), 3차(발표평가, 9.24)에 걸쳐 심사하여 총 9개 자치단체를 최종 선정하였다.

< 안전도시 시범 지자체 선정 현황 >

<경기> 과천시	<강원> 횡성군	<대전> 대덕구
<충남> 천안시	<광주> 남구	<전북> 익산시
<전남> 장흥군	<대구> 동구	<경남> 함양군

- 선정된 9개 시범 자치단체에는 행안부가 지원하는 특별교부세 5억 원과 자치단체의 안전관련 사업예산이 투입되어,
 - 지방 자치단체가 스스로 책임을 가지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 안전공동체(safe community)를 통해 안전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 행정안전부는 성공적인 시범사업을 위해 시범도시의 사업계획 보완 및 추진 상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의견수렴 및 컨설팅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 또한, 범죄예방 등 각종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의 U-City 사업과 연계해 ‘U-Safe City’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각종 안전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 행정안전부는 금년도에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내년부터는 정부합동평가에 반영하는 등 안전도시 사업을 전 자치단체로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안전도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한국형 안전도시 모델을 구축하고,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이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안전한국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고	안전도시 시범 지자체 주요 사업내용
----	---------------------

지자체	주요 사업내용
경기 과천시	'어린이가 안전할 정도의 도시는 모든 시민이 안전한 도시'라는 것을 전제로 전 주민들이 참여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추진
충남 천안시	천안(天安-'하늘아래 가장 편안한 곳')이라는 의미와 같이 하늘도, 땅도, 사람도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모두가 생활속에서 최고의 행복을 느끼는 월드베스트 천안 추진
전북 익산시	여성부의 여성친화도시 1호 로 선정된 지역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의 정책으로 여성과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건설
대전 대덕구	'주민참여 안전포인트제 운영', '교통사고 제로비전 선포식', '안전 평생학습 배달 강좌제' 등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거버넌스 안전 네트워크 구축
광주 남구	'생생 하우스 안전망 구축', '횡단보도 LED 볼라드 설치' 등 도시생활의 안전 위협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안전 대책 추진
대구 동구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 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에 대한 생생한 체험을 통해 전국민의 안전 마인드 고취 에 전념 * 다크 투어리즘 : 역사적인 비극의 현장을 방문하여 자기반성을 하고 교훈을 얻기 위한 여행을 의미
강원 횡성군	'미래청정법인 횡성'을 바탕으로 '우리고장은 우리 스스로 지키고 가꾸고 발전시킨다'라는 지역사회개발운동 으로 안전도시를 적극 구현
전남 장흥군	농촌, 산촌, 어촌이 한 지역에 복합적으로 형성된 지역이라는 특색을 바탕으로 사람중심의 사고 및 범죄가 없는 안전 도시 를 추진
경남 함양군	'어린이 안전체험학교'를 조성하여 어린이 및 부모들이 각종 안전사고 사례를 직접 체험하며 안전사고의 원인과 예방법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자생능력 을 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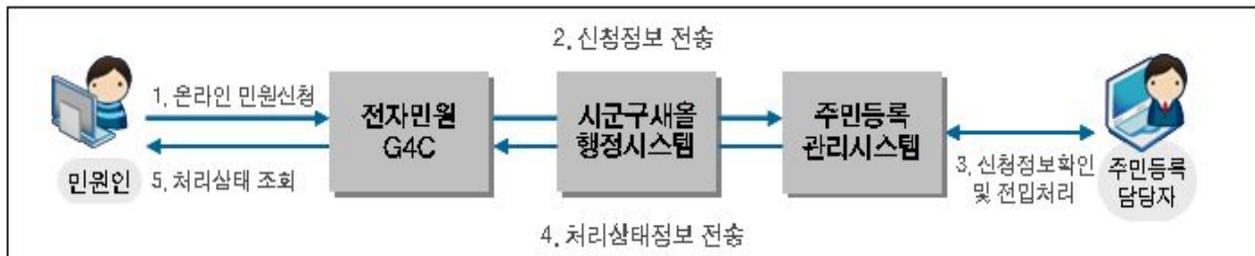
2 "전입신고, 직장이나 집에서 인터넷으로 해결하세요"

- 행정안전부, 전입신고 온라인 서비스 개시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오는 10월 14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전입신고를 전자민원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처리해야했던 전입신고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자민원G4C(www.egov.go.kr)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 기존에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야 하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있어,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야하는 직장인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이사철에 맞추어 전입신고의 온라인 서비스를 개통함으로써 그동안 불편을 겪어왔던 국민들이 고충을 해소하고, 종이문서를 발급하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어져 행정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전입신고는 매년 330만 건이나 발생하는 민원사무로 온라인화 되지 않는 민원사무 중 발생량 기준 1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전입신고 중 30%가 온라인서비스로 처리된다면, 매년 108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 절감비용(108억원) = 방문처리건수(330만건/년) X 온라인률 목표(30%) X 평균인건비(10,919원)
- 전입신고 온라인 서비스는 10월 7일부터 경기도 성남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와 서귀포시 3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통해 서비스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전국적인 서비스는 10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전자민원G4C(www.egov.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하면 방문 신청하는 것과 동일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전입신고 완료 후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주민등록표 열람을 통해 전입 확인이 가능하다.

※ 전입신고 온라인 절차



-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주요 생활민원 중 하나인 전입신고의 온라인 서비스가 개통됨으로써, 국민들은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수고는 줄어들고, 전자민원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그린민원시대 개막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3 주민등록증 집·사무실에서도 받을 수 있다!

— 주민등록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10월 2일부터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받을 수 있던 주민등록증을 원하는 장소에서 직접 등기로 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제도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없어지는 대신 「거주불명등록제도」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 또한,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주민등록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개정된 주민등록법령을 10월2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달라지는 주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증 직접 배송제(프리미엄 등기제) 도입

- 그동안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면 반드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자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발급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등 국민들로부터 많은 불편이 제기되어 왔지만,
- 오는 10월2일부터는 민원인의 신청에 따라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주민등록증을 직접 원하는 곳으로 배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전한 배송을 위해 반드시 민원인 본인에게 최고 3회 이상 배송하고 발급기간을 최대 5일 이상 단축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 거주불명등록제도로 전환

-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 대신 주민이 전입신고한 최종 주소지와 관할 읍·면·동 사무소 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하여 행정상 주소로 관리하게 된다.
- 이것은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로 인해 선거권 및 의무교육 제한, 건강보험 자격정지,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 등 국민의 권리·의무행사가 제한되어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어 온데 따른 것이다.

○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 전입신고와 같은 주민등록사항 신고는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자, 본인 등으로 제한하고 신고의무자가 신고위임 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도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신고의무자의 신고위임의 범위를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 확대하여 남녀차별 문제와 주민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등

- 가족간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위임장 없이도 가능함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이전이 확인되어 폭력이 재발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지정하는 가족에게는 피해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및 교부신청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이혼한 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직계비속에게는 이혼한 당사자가 새로 구성한 가족들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혼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하여 교부할 방침이다.
- 이밖에도 가족간의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임장 없이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를 세대주의 배우자와 세대주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 세대주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주민등록법령 개정 시행과 함께 주민등록전산 관리시스템 등을 개선하여 국민편의 위주의 제도 운영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전입신고」를 10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민등록관련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국민생활 편의위주의 제도개선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4 읍·면·동 사무소에서 전기요금 감면신청까지 한번에!

- 전기요금감면 신청절차 간소화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9월 22일(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전기요금 감면 대상자가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집에서 인터

넷(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www.oklife.go.kr)이나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기존의 전기요금 감면 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감면 대상자 본인이 직접 한국전력을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업무 담당자가 행정망을 이용하여 자격자 여부를 확인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하면 전기요금 감면 수혜자격 여부를 본인이 직접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다음날부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이번 전기요금 감면 신청절차 간소화는 행정안전부가 지식경제부, 한국전력과 긴밀히 협의하여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에 한국전력 영업정보시스템을 직접 연결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으며
- '08년 말 현재 전기요금 감면가구는 115만호로 수혜율은 70% 수준이나 행정안전부의 이번 신청절차 간소화로 보다 많은 요금감면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부터 이동통신 전화요금 감면신청절차 간소화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읍·면·동 사무소 방문시 전기요금 감면 신청과 이동전화요금 감면신청을 한꺼번에 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편리함이 대폭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서비스 창구별 전기요금감면 신청절차

주민서비스 대국민포털 창구

- 감면대상자 본인이 인터넷(www.oklife.go.kr)에 접속하여 증빙서류 제출없이 감면대상자(장애인 등) 여부를 직접 확인받고 바로 신청
 - 전출입시 계량기에 고객번호(전기요금 청구서에 기재)를 주민서비스의 전기요금감면 신청화면에 입력 필수
 - ※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접속이 필요

주민서비스 행정지원 창구

- 감면대상자가 신분증만 가지고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기요금감면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행정지원시스템(공무원 전용)에 접속하여 신청 대행
 - 전출입시 계량기에 고객번호 알고가면 신속 처리
 - ※ 신청 대행시 감면대상자의 개인정보활용 동의안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전기요금감면 신청절차 간소화」 정보흐름도



5 중앙부처 정책연구용역 자료 쉽게 열람할 수 있다

- 정책연구정보시스템(PRISM) 기능개선 사업 완료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중앙부처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과제 진행과정과 연구용역 결과물을 쉽게 열람·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정보시스템(PRISM)의 기능을 개선하여 9월 21일(월)부터 www.prism.go.kr을 통해 본격 서비스한다.
- 행정안전부의 이번 PRISM시스템 개선사업은
 - 정보제공 분류체계 개편으로 용이한 정보접근, 관심분야 등록시 자동 통보 서비스를 구현하였고
 - 정부 연구기관 및 16개 시·도 발전연구원, 민간연구소 등 30여 기관에 대한 정책연구정보 연계로 검색 서비스를 확대시켰으며,
 - 과제담당 공무원과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들이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사이버 연구공간을 마련하였다.
 - 또한, 연구 결과물 등록시 자동으로 내부 보관용과 서비스용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구현하였다.
- 이로써 대국민 맞춤형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과 고령자 등을 위한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되고
 -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용역 결과물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예산 낭비요인 제거 및 통합검색 시간 단축과
 - 정책연구용역 과제에 대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연구보고서의 질적 향상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 정부수행 연구저작물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보호강화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 향후 행정안전부에서는 정책연구정보서비스를 통하여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 관련 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6 행정안전부, 추석맞이 어려운 이웃에 봉사활동 전개

- 행정안전부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에 놓인 장애인, 독거노인, 고아원, 양로원 등 불우한 이웃을 위해 사랑의 봉사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 이달곤 장관을 비롯한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과 직원들로 구성된 45개 봉사단 512명이 십시일반 성금(1,413만원)을 모아 9. 10부터 9월말까지 사회복지시설(39개) 및 어려운 이웃(11가구)을 방문하여 이들에게 급식, 청소, 말뚝, 시설보수 등을 통한 따뜻한 마음과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
- 지난 9. 10 국립과학연구소 서부분소에서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아동양육시설인 상록원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9. 14에는 기업협력지원관실이, 9. 15에는 광주청사관리소가 각각 사회복지시설인 에덕의 집과 평화의 집을 방문하여 청소 등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성금 50만원을 전달했다.
- 한편, 행정안전부 공무원들로 구성된 「행복드림 봉사단」은 매일 정신지체, 뇌병변, 중복장애 등 1급 중증장애인시설인 『평화로운 집』(서울 은평구 소재)을 찾아 발마사지, 급식보조, 산책, 대화를 통해 장애인들과의 오붓한 시간을 가지며 위문금을 전달해 오고 있으며,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낙도, 오지에 사랑의 책 보내기, 봉급우수리 모금을 통한 저소득층 가구 지원, 보수반납 기부운동의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봉사활동 및 위문을 계속하고 또한, 사랑의 헌혈 릴레이, 사랑의 연탄 배달 등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전개하여 정성을 다해 국민을 섬기는 정부의 중추부처로 역할을 다하고 소외계층 지원사업 등을 통해 사랑나눔으로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7 10년부터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도입

- 국민의 추가부담은 없으며, 납세절차도 현행과 동일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9.16(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하여, '10년부터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를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하였다.
- 이번에 발표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의 주요내용은
 - ① 의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등 지방세 구조개선
 - ②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약 1조 4,000억원의 지방재정 확충
 - ③ 지역간 상생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외의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하기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설치 등이다.
-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 도입
 - 우선, '1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약 2.3조원)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며,
 - 앞으로 3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3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추가 이양을 추진한다.
 - 지방소비세의 배분은 시·도별로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하되,
 -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광역시·도 등 권역별로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 지방소비세 도입은 새로운 조세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은 현행과 동일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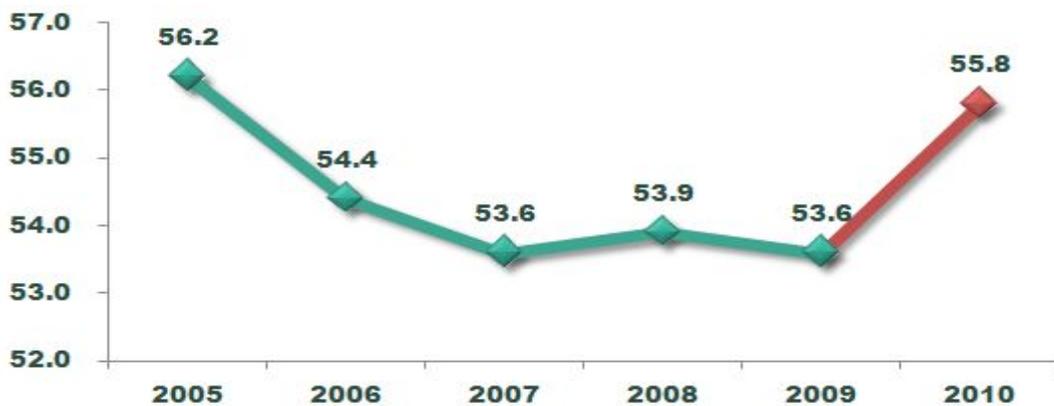
- 부과·징수도 현행과 같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와 통합 관리하므로 국민의 납세불편도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 지방소비세 도입의 의의

- 지방소비세 도입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난 10여년간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숙원과제로서,
- 참여정부에서도 정부가 조세개혁특위를 구성하여 지방소비세 도입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바 있으나, 이번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을 통해 드디어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 이번 세제개편은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세를 확충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 지방소비세 도입의 기대효과

- 우선,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최근의 지속적인 하락추세에서 벗어나, 약 2.2%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현재, 총 조세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1%에 불과하나, 앞으로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 지방세 중 소득·소비과세의 비중도 확대되어 지방세입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지방소비세는 수도권 집중도가 낮기 때문에(29%), 지방세의 수도권 집중도 역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분	지방소비세 도입전('09년)	지방소비세 도입후('10년)
수도권 비중	61.0%	59.6%

- 한편, 지방소비세 도입은 이와 같은 재정지표 개선효과 외에도 실질적인 재정분권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지방세와 지역경제의 연계 강화를 통해 「경제활성화 → 지방세 확충 →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 나아가, 자치단체가 이전재원 확보에만 주력하는 행태를 벗어나 세수 증대를 위해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책임성도 크게 제고될 것이다.
-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
 - 우선, '10년부터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과표와 세율을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 향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합동 TF를 구성하여,
 - '13년까지 납세자 불편이나 징세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완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 지방소득세 도입효과

- 지방소득세는 지역경제 활동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고, 비과세·감면 등 자치단체의 실질적 과세자주권을 보장하는데 가장 적합한 세목이다.
- 앞으로 지방소득세가 완전한 독립세로 정착되면, 자치단체가 기업유치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조세정책 수단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방재정 확충 - 지방재정에 약 1조 4,000억원을 추가 지원

-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국가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 종합부동산세 정상화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 등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매년 약 1.4조원*을 지방소비세를 통해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 지방소비세(2.3조원)에서, 교부세 자연감소분(0.44조)과 교육교부금 자연감소분(0.46조원)을 공제한 만큼 지방재정이 순증

- 교육교부금 자연감소분은 교육교부금을 인상(0.35조원, 0.27%p) 및 시도의 교육청 전출금 확대(0.11조원)을 통해 전액 보전

□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확충

- 한편, 지방소비세가 시·도세인 점을 고려하여, 시·군·구에도 재원(약 5,000억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였다.

- 우선,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을 개편하여, 내년부터 부동산교부세가 전액 시·군·구에 배분되도록 하였으며,

※ 현재는 우선 시·도 및 시·군·구의 세수감소분을 우선 보전하고, 잔여재원을 시·군·구에 배분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3)

- 또한, 재정보전금 제도를 개편하여, 시·도세인 지방소비세의 일정비율이 시·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재정보전금 : 시·군이 징수하는 시·도세의 27%(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를 시·군에 지원 (지방재정법 제29조)

□ 분권교부세 운영기한 연장

- 금년말에 종료토록 되어 있던 분권교부세의 운영기한을 5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 이는 분권교부세가 없어지면, 사회복지 관련 지방이양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사업이 축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등은 '10년부터 현행 분권교부세 사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사회복지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복지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해가기로 하였다.

□ 수도권-비수도권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

- 수도권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방에 지원하기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가 향후 10년간 지방소비세 세입 중 일정비율(매년 3,000억원 규모)을 출연하여 재원을 조성하며,
-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 지역 SOC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포괄보조금 형태의 재정지원과 장기저리의 자금융자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동 기금은 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구성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구성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로 하였다.
-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상생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사회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확정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은

-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지원 필요성 등에 따라, '08년 12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추진계획이 발표된 이후,

- '09년 2월, 서울대학교 김동건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간전문가 특위에서 제도개편 방향을 설정하고,
 - '09년 4월부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세부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 '09년 9월, 당정협의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 정부는 금일 확정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이 '10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 오는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재정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8 하이브리드차 구매시 20여만 원 추가 혜택

- 행안부·시도 협의하여 지역개발채권 면제하기로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올해 10월 1일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자들이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역개발채권 발행 주체인 시·도와 협의하여 추진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 이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는 지역과는 달리 채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 * 도시철도채권 발행지역(서울, 부산, 대구) / 지역개발채권 발행지역(그외 시도)
- 지역개발채권 매입이 면제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자는 그간의 각종 세제혜택(개별소비세, 취·등록세)과 더불어 약 20여만원의 추가적인 채권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 하이브리드 차량 가격(2,400만원) → 채권매입액(차량가격 6%, 144만원) → 즉시매도시 구매자 부담금(할인을 15%, 216,000원) 면제
- 행안부와 시도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채권 감면이 지역개발기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도간에 채권감면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여 왔다.
 - 채권감면은 지역주민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주기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급적용하기로 하였으며,
 - 시도별로 조례개정을 추진하되, 채권면제는 주민들이 채권감면 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조례 입법예고일(10월 1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 10월 1일 이후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자는 조례가 개정(연말)되기 전까지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조례가 개정·공포된 이후 환급받을 수 있음
- 정헌을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앞으로도 시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저탄소 녹색성장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9 공간정보 활용으로 더욱 편리해지는 행정서비스

- 행안부, 공간정보를 활용한 행정서비스 시범2차 사업 추진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국토부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 시범 2차 사업에서 삼성SDS, 솔리테오, 씨엔아이에스, 올포랜드 등이 참여한 삼성SDS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입찰 참여 업체 : 삼성SDS 컨소시엄, LGCNS-SKC&C 컨소시엄

- 일선 자치단체 행정업무에 공간정보 활용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한 시범1차 사업이('09.2 ~ '09.8)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금번 2차 사업에서는 공간정보를 활용한 시민생활에 유용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이번 2차 사업에서 개발하는 주요서비스를 살펴보면,
 - “인허가 사전확인 서비스”는 공간정보를 활용한 각종 규제 지도를 구축·제공함으로써 기존 공장설립 및 각종 인허가 가능 여부 판단에 3~4주 이상 소요되는 시간이 단 한번의 인터넷 클릭으로 사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안전분야에도 접목시켜 범죄발생지역, 교통사고다발지역 등 도보 안전지도를 구축·제공하여 “안전한 통학로설계”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공간정보 대민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용가능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 행정서비스와 연계된 주민 밀착형, 양방향 서비스를 통해 적극적인 이용자 참여를 도모하고 이를 통한 양질의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를 확대·재생산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금년도 추진하는 1·2차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구축·운영하여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더욱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산학연 공간정보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간정보활용 전문가 협의체”(가칭)를 통해 공간정보분야의 활용정책 발굴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임도 밝혔다.

10 안전·안심·안정'안전도시 시범사업 자치단체 호응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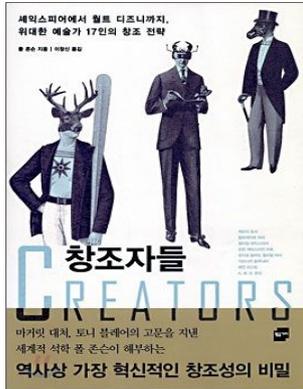
- 40개 우수 시군구 안전도시 시범사업 접수 -
- 5~10개 시범도시 선정, 5~10억원 인센티브 지원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가 추진하는 안전도시 시범사업에 총 40개 시·군·구가 시·도별 자체심사를 통해 시범사업 우수 자치단체로 추천되었다.
- 안전도시 시범사업에는 총 81개의 자치단체가 출사표를 던졌으며, 최종적으로 5~10개가 선정될 예정이다.
- '안전도시(Safe City)'는 '안전·안심·안정' 중심의 새로운 안전관리 패러다임에 기반한 지역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주민과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스스로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각 시도에서 추천한 안전도시 시범사업 자치단체 현황을 보면,
- 서울(은평구, 송파구, 마포구), 부산(동래구, 금정구, 해운대구), 대구(동구, 수성구, 중구), 대전(대덕구, 유성구), 인천(옹진군, 계양군), 광주(남구, 광산구), 울산(중구, 동구, 울주군)
- 경기도(수원시, 과천시, 용인시), 강원도(원주시, 삼척시, 횡성군), 충청북도(충주시, 증평군, 진천군), 충청남도(천안시, 예산군, 당진군), 전라북도(익산시, 남원시, 완주군), 전라남도(장흥군), 경상북도(상주시, 경산시, 영덕군), 경상남도(함양군, 밀양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천되었다.
- 행정안전부는 9.4(금) 학계, 연구원, 관련 전문가로 시범사업 평가단(7인)을 구성하여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한 서면심사를 거쳐 1차로 20여개의 안전도시 시범 자치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 이후 현지실사(9.9~9.18), 발표평가(9.21~9.25) 등을 거쳐 9월말까지 5~10개의 자치단체를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시범도시로 선정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5~10억 범위 내에서 소요사업비를 인센티브로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범죄예방 등 각종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의 U-City 사업과 연계해 'U-Safe City'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등 각종 안전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안전환 환경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금년도에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내년부터는 정부합동평가에 반영하는 등 안전도시 사업을 전 자치단체로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http://www.mogaha.go.kr/>]

부록 : 행복한 책 읽기



도서명	: 창조자들
저자명	: 폴 존슨
출판사	: 황금가지
출판년	: 2009년
페이지	: 500
가격	: 19,000원

마거릿 대처, 토니 블레어의 고문을 지낸 영국을 대표하는 석학 폴 존슨의 새로운 역사 에세이 『창조자들』이 (주)황금가지에서 출간됐다. 14세기 초서에서 20세기 피카소까지, 역사적으로 이전 세대와 구분되는 혁신적인 업적을 남긴 예술가 17인의 삶을 통해 창조성의 베일을 벗긴다. 전통적인 문학, 회화, 음악, 건축에서 비교적 근대에 들어 예술로서 주목받기 시작한 실내 장식, 의상 디자인, 애니메이션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국적을 넘어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활약한 인물들을 탐색한다.

폴 존슨은 세계적인 역사학자로 역사, 인문, 종교, 예술 분야의 방대한 영역에 걸쳐 40권 이상의 책을 썼으며, 이들 대부분이 수십 개 언어로 번역되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영국 현대사의 최전선에서 마거릿 대처의 고문 겸 연설문 작성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 책에서 존슨은 특유의 방대한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각 인물의 삶과 창작 활동을 다각적으로 재조명하고, 그들이 남긴 업적이 어떤 점에서 뛰어나고 이전 세대와 구별되는지 설명한다.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예술가들의 흥미진진한 사생활이나 창작에 얽힌 풍성한 뒷이야기들도 집요한 추적으로 생생하게 엮어 냈다.

창조란 지적, 정신적 용기를 요하며, 시원스레 해부할 수 없는 신비로운 작업이라는 게 존슨의 생각이다. 그러나 그 두드러진 특성을 꼬집어내다 보면 어느 정도 설명할 수는 있다. 교훈적이고 재기 넘치는 이 책이 보여 주고자 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다. 독자들은 남다른 열정과 불굴의 의지, 독특한 개성으로 시대를 풍미한 예술가들의 생애를 통해 자신만의 창조적 삶을 설계하는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창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신만의 전략과 무기로 세상을 놀라게 한 창조자들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최악의 불황기, 신예 패션 디자이너 크리스티앙 디오르(389p.)는 값비싼 원단을 아낌없이 써서 만든 ‘뉴 룩(New Look)’으로 검약과 평등을 강조하는 시대 조류에 반기를 든다. “부자들이 다시 부자라고 느끼도록 해 주고 싶다.” 디오르의 말이다. 피카소(416p.)는 바르셀로나에서 정통 회화에 치중하던 시기에는 카사스 같은 대가에 밀려 이렇다 할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자 최첨단 유행의 도시 파리로 자리를 옮겨 자연의 재현에 중점을 둔 기존 화풍에서 탈피, 아예 자신이 뛰어놀 새로운 ‘무대’를 창조했다. 피카소가 20세기 현대 미술을 지배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순수한 창작물의 가치에서 비롯했다기보다는 트렌드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 자신의 스타일을 끊임없이 바꿔 나간 탁월한 전략적 선택에서 나왔다는 게 존슨의 주장이다. 이렇듯 이 책에서 다루는 예술가들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저마다의 특징적인 창조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 대상에 대한 애정에서 출발하라

영문학의 창시자로 일컬어지는 초서(35p.)와 불멸의 대문호 셰익스피어(91p.)를 만든 건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다. 그들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 하는 대신 생생한 인간의 삶 그대로를 ‘보여 주는’ 길을 택했다. 존슨은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 속 등장인물들과 셰익스피어가 창조한 폴스타프(『헨리 4세』)와 햄릿이라는 모순적이고 입체적인 캐릭터를 통해 그것을 만들어 낸 창조자에 접근한다. 월트 디즈니(433p.)가 동물에 인격을 부여해 캐릭터로 탄생시킨 바탕은, 어린 시절 미주리 시골 농장에서 자라면서 몸에 밴 자연을 향한 애정이다. 세기의 캐릭터인 미키 마우스는 디즈니가 집 안을 돌아다니던 생쥐에게 ‘모티머’라는 이름을 붙이고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탄생했다.(439p.)

▶ 선택과 집종의 미학

터너(163p.)와 호쿠사이(184p.)는 이전까지만 해도 거의 주목받지 못하던 회화 장르인 풍경화에 몰두해 거장 반열에 올랐다. 제인 오스틴(199p.)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쓸 수 있는 중상류층의 사교계를 중심으로 소재를 한정해 이야기의 경제성을 획득했다. 지난 200년간 한 번도 절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영어권에서만 1년에 100만 부 이상이 보급판으로 팔려 나가는 오스틴의 소설은, 시골 목사관 위층에서 언니 커샌드러와 한 방을 쓰면서 주변에서 일어난 시시콜콜한 일들을 공유하며 수다를 늘어놓던 일상에서 비롯되었다.

▶ 과거 대가들의 업적을 창의적으로 모방하라

디오르와 피카소의 예에서 보듯 ‘창조’에서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혁신과 역발상은 핵심적인 요인이다. 그러나 누구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는 않는다고 존슨은 말한다. 실제로 창조자들은 늘 과거에서 영감을 얻었다. 영국의 건축가 A.W.N. 퓨진(233p.)은 고딕 양식을 부활시켜 런던 국회 의사당을 복원하는 등 눈부신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 프랑스의 패션 디자이너 발렌시아가(384p.)는 벨라스케스나 마네 같은 화가의 작품 속 여성들의 옷차림을 현실적으로 재해석해 내놓았다.

▶ 연습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타고난 능력만으로는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작품을 내놓을 수 없다. 일부 창조자들은 투철한 직업의식과 평생에 걸친 피나는 연습과 노력으로 정상에 올랐다. 오르간 연주자이자 작곡가인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137p.)와 발렌시아가는 성직자처럼 경건한 소명 의식으로 일하며 작품 하나하나에 혼신의 힘을 불어넣은 장인들이다. 어머니에게 배워 세 살부터 바느질을 시작한 발렌시아가는 이후 죽을 때까지 날마다 조금씩 바느질을 하면서 실력을 유지했다. ‘북유럽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 불리는 뒤러(65p.)의 손은 판화 작업 중에 생긴 온갖 상처와 채 아물지 않은 흉터, 산화제로 인한 벌건 화상 자국으로 성한 날이 없었다.

▶ 최고가 되고 싶다면 최고와 일하고 과감하게 투자하라

창조자 중에는 뛰어난 사업 수완을 보인 이들도 많다. 퓨진과 유리 공예가이자 실내 장식 사업가인 티퍼니(315p.), 디오르와 디즈니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르네상스 시대의 작업장처럼 각 분야 최고의 장인과 전문가들을 영입하거나 그들과 제휴를 맺어 업계 최고의 대우를 해 주며 함께 일했다. 최상품을 만들어 내기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았다. 터너는 비록 실패도 많았지만 새로운 안료가 개발될 때마다 가장 먼저 시도했고, 좋은 품질의 작업 도구를 구입하는 데는 비용을 아끼지 않았다. 디즈니 또한 작품의 질을 최우선으로 삼고, 수입이 생기는 족족 신기술과 인재 발굴에 투자했다. 1930년대 초 8분짜리 영화 한 편을 만드는 데 디즈니가 들인 비용은 1만 3000달러가 넘었다. 당시 경쟁사가 지출한 비용은 최대 2500달러였다.

[자료출처 : 인터넷서점]

